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날 짜 2015. 8. 19. (총 33 쪽)

## 보 도 자 료

### 참여연대,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 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 부서가 담당하는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 ‘18세 미만자’ 등의 용어를 ‘연소자’ 로 대체 ▶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로 대체하

는 내용

###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 별첨자료

1. 2015.05.13. 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발신 공문
2. 2015.05.18. 자 법무부 공안기획과 발신 검찰총장 수신 공문
3. 고용노동부 질의내용
4. 법무부 질의내용
5.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 별첨자료 1. 2015.05.13. 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발신 공문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만들어 가는 투명한 정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1. 관련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50호)
2. 국회 장하나 의원 및 양승조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김관영 의원 및 류지영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5.5.29.(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제출 서식>

개 정 안	수 정 안	검 토 의 건

- 붙임: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1914622, 2015.4.6.) 1부.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양승조 의원, 1914919, 2015.4.29.) 1부.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1914495, 2015.3.30.) 1부.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류지영 의원, 1914933, 2015.4.29.) 1부.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본, 각부처

▣ 별첨자료 2. 2015.05.18. 자 법무부 공안기획과 발신 검찰총장 수신 공문

'희망의 새 시대'



# 법 무 부



수신 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최저임금법(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 및 근로기준법(김관영 의원, 류지영 의원)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04(2015.5.13.)호와 관련입니다.  
 2. 불임 내용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 부 의견을 회신하기에 앞서, 귀 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5. 5. 2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검찰추사	검찰사무관	검사	과장	전결 2015. 5. 18.
협조자				
시행 공안기획과-1382	접수			
우 427-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층 법무부	/ <a href="http://www.moj.go.kr">http://www.moj.go.kr</a>		
전화번호 02-2110-3537	팩스번호 02-3480-3555	/	/ 비공개(5)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 ▣ 별첨자료 3. 고용노동부 질의내용

### 1. 법무부 공안기획과 관련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법무부 내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질의합니다.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합니다.

### 2. 타 부처 소관 법령 담당부서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합니다.
- 부처 별 혹은 법령 별로 의견조회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분야(부처) 별로 고용노동부 내 담당부서와 담당분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하여,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부처 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자료 4. 법무부 질의내용

### 1.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할 이유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할 이유를 질의합니다.

### 2.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노동사안과 관련하여 공안기획과가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해당 업무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합니다.

### 3. 각 법령 별 법무부 내 담당부서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합니다.
- 부처 별 혹은 법령 별로 의견조회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분야(부처) 별로 법무부 내 담당부서와 담당분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고용노동부 의견조회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 별첨자료 5.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95
----------	-------

발의연월일 : 2015. 3. 30.

발 의 자 : 김관영 · 김영록 · 배재정

박남춘 · 백재현 · 부좌현

오제세 · 이개호 · 이상직

이종걸 · 정성호 · 주승용

최규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행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기숙사 등의 임검(臨檢)이나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조항에 비밀유지 의무만이 규정되어 근로감독 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u></p> <p>③ <u>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33
----------	-------

발의연월일 : 2015. 4. 29.

발 의 자 : 류지영·송영근·강석훈

강기윤·양창영·홍일표

이한성·유의동·황인자

강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상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

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만자”를 “미만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로 한다.

제66조 중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한다.

제69조 본문 중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18세 미만자”를 각각 “연소자”로 한다.

제5장에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연소자 및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연소자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생략)

②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3. (생략)

③ (생략)

<신설>

-----  
-----  
-----  
-----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연소자-----

-----  
-----  
-----  
-----  
-----.

1. 연소자-----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연소자 및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신 설>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연소자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22
----------	-------

발의연월일 : 2015. 4. 6.

발 의 자 : 장하나·김춘진·남인순·은수미·이개호·이인영·전순옥·정청래·진선미·한명숙·한정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최저임금과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인하여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이를 중재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6명, 정부가 3명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 신설).

더불어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7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한 경우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회의의 개최일 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u>&lt;신 설&gt;</u>  ② ~ ⑥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7조(회의) ① ~ ④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17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u>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⑦ <u>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한 경우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u>



<신 설>

회의의 개최일 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19
----------	-------

발의연월일 : 2015. 4. 29.

발 의 자 : 양승조·설 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  
·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  
오제세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자료제출관련 규정,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 법률 제 호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시기,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